#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(대안)

의 안 <u>25858</u> 제안연월일: 2023. 12.

제 안 자 :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
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가. 다음 2건의 법률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해양수산법안심 사소위원회에 회부함.

건 명	의안번호	대표발의자	발의일	전체회의 상정일
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	17776	윤재갑의원	2022.10.11.	2023.02.21.
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	18285	이달곤의원	2022.11.16.	2023.02.21.

- 나. 위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10회국회(정기회) 제2차 해양수산 법안심사소위원회('23.11.07.)에서 심사한 결과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.
- 다. 제410회 국회(정기회)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('23.11.08.)는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 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※ 제410회 국회(정기회)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('23.11.08.) 비용추계 생략 의결

#### 2. 대안의 제안이유

최근 해상에서의 조난사고 발생 및 구조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, 해양경찰 등 공공 구조세력만으로는 넓은 해역과 구조자원의 한계상 신속한 대응과 구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고, 실제로 해상조난사고의 경우 민간 구조세력에 의한 구조율이 약 42%에 달하는 등 민간구조세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. 특히, 지역해역에 정통한 어민, 잠수사, 해양레저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해양구조대의 경우 최근 구성인력이 보다 다변화되고 증가하여 그 역할도 해양 구조 외에 해상안전 및 환경정화 등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고, 해양레저인구의 증가등을 고려하면, 보다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.

이처럼 민간해양구조대가 해양사고 대응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「수상구조법」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정의와 그 처우 등만규정하고 있고 그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없음.

이에 제정안의 취지를 살려 법률안의 제명을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변경하고,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개별법으로 제정함으로써 해양재난구조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.

#### 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(안제1조).
- 나. 해양경찰청장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·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음(안 제3조).
- 다. 해양재난구조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12월 23일을 해양재난구조대의 날로 정함(안 제5조).
- 라.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, 조직, 임무를 규정함(안 제6 조부터 제8조까지).
- 마.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장 착용, 신분증 소지 의무 및 경력증명 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.
- 바.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재난구조대원을 소집, 지휘 및 감독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 조).
- 사. 기부금품 모집, 영리행위 등 해양재난구조대원의 행위 금지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).
- 아.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·감독을 실시하고, 임무수행에 필요한 관리·지원 및 교육·훈련을 실시

하도록 하되, 이를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).

- 자.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임무의 수행 및 교육·훈련 참여 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고, 성과중심의 포상을 실시함(안 제14조 및 제15조).
- 차. 국가·지방자치단체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임무의 수행 또는 교육·훈련으로 인하여 질병·부상·사망한 경우 보상금 및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함(안 제17조).

#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#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 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해수면"이란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.
  - 2. "수난구호"란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수난구호를 말한다.
  - 3. "조난사고"란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5호에 따른 조난사고를 말한다.
- 제3조(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)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수면에서 해양 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는 각 해양경찰서가 위치한 광역시

- ·도·특별자치도, 시·읍 또는 면에 둔다.
- ③ 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④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다.
- 제5조(해양재난구조대의 날 제정과 운영) ① 해양재난구조대의 봉사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12월 23 일을 해양재난구조대의 날로 정한다.
  -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의 날에 해양수산 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2장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ㆍ해촉 및 조직 등

- 제6조(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) ① 해양경찰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위촉할수 있다.
  - 1. 지역해역에 정통한 주민 등 해양경찰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대

- 응 · 예방 활동의 지원이 가능한 사람
- 2.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의2에 따른 수 상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
- 3. 「한국산업인력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잠수기능사 또는 잠수산업기사 자격을 갖춘 사람
- 4. 잠수·선박·해양 관련 분야에 대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
- 5. 의사·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
- 6.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
- ②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양재난구조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.
- 1.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
- 2.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. 다만,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 등 해양 재난구조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3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5. 제11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
- 6.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- ③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필요한 사항은 해

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- 제7조(조직) ① 해양재난구조대에는 대장·부대장·부장·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.
  - ② 대장 및 부대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 중 관할구역 내 해양경찰서 장의 추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고, 부장 및 반장은 관할구 역내 해양경찰서장이 위촉한다.
  - ③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의 조직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 산부렁으로 정한다.
- 제8조(임무) 해양재난구조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해수면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·구조·구난 활동의 지원
  - 2. 태풍 등 재난 발생 시 순찰, 선박 등의 안전상태 점검 등 조난사 고 예방 활동의 지원
  - 3.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
  - 4.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의 해양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
  - 5. 그 밖에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사항
- 제9조(복장 착용 등) ①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조난자 구조 등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복장착용 및 신분증 소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.

- ②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 또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이었던 자가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- ③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장·신분증, 경력증명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## 제3장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

- 제10조(소집 및 현장 출동) ① 해양경찰청장,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(이하 "해양경찰청장등"이라 한다)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예방·대응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.
  - ② 해양재난구조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집명령에 따라 조난사고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해양경찰청장등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해양경찰 업무를 지원한다.
  - ③ 해양재난구조대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 등의 소집명령이 없어도 긴급하거나 통신이 두절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예방·대응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양재난구조대장은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예방·대응 등의 임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 제11조(행위의 금지) 해양재난구조대원은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  - 1.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
  - 2. 영리목적으로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
  - 3.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
  - 4. 소송·분쟁·쟁의에 참여하는 행위
  - 5.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
- 제12조(복무에 대한 지도·감독)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 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에 대한 지도·감독을 실시하 여야 한다.
- 제13조(관리·지원 및 교육·훈련 등)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 조대원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관리·지원 및 교육·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② 해양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·지원 및 교육·훈련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할 수있다. 이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지원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관리·지원 및 교육·훈련의 내용, 주기,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### 제4장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

- 제14조(경비 등의 지급)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제8 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·훈련에 참 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(이하 "경비"라 한다)를 지급할 수 있다.
  - ②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구조활동에 필요한 제복을 대여 또는 지급하거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.
  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해양재난구조 대원이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5조(성과중심의 포상 등)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 및 해양재난구조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·관리하고, 이를 토대로 성 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및 해양재난구조대원별 활동실적 평가·관리 방법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16조(공유재산의 무상대여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재난구조대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구조장비 등 필 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- 제17조(재해보상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재난구조대원 이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·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(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입거나 사망(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한 경우에는 그 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·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(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입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및 치료비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  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치료의 기준·절차 등은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해양재난구조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해양경찰관 서에서 운영·관리되고 있는 민간해양구조대는 이 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해양재난구조대로 본다.

- 제3조(해양재난구조대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수상에서의 수색・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민 간해양구조대원은 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해양재난구조대 원으로 본다.
- 제4조(재해보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수 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7항에 따라 치료 또는 보상금을 신청, 청구, 결정, 지급한 사항은 이 법에 따라 신청, 청구, 결정, 지급한 사항으로 본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신청, 청구, 결정, 지급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처리기간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의 시행일을 그 기산일로 볼수 있다.
- 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1. "해양재난구조대원"이란 「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위촉된 해양재난구조대원을 말한다"로 한 다.

제27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.

제28조제3호 중 "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서"를 "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서"로 한다.

제30조의 제목 "(민간해양구조대원등의 처우)"를 "(해양재난구조대

원등의 처우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제2항 중 "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(이하 이 조에서 "민간해양구조대원등"이라 한다)가 제1항에 따라"를 "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"로 한다.

①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처우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.

제30조제3항 본문 중 "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"를 "제2항에 따른 수난 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"로 하고,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"민간해양 구조대원등이"를 "제2항에 따른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"로 하고, "구조업무 및 구조 관련 교육훈련으로"를 "구조업무로"한다.

제30조의12제2항 중 "심해잠수사(민간해양구조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잠수사를 포함한다)"를 "심해잠수사(해양재난구조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잠수사를 포함한다)"로 한다.